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31호 2025. 7. 10.(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693호)
-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694호)

훈 령

- 예천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72호)

고 시

- 예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88호)

공 고

- 예천 군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00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93호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 상담 및 심리치료,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 직업훈련 교육 등

라. 사업수행 법인이나 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6조)

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제6조)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94호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개발, 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 상담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 경계성 지능인 :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나. 군수의 책무(제3조)

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제5조)

-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지원사업(제6조)

-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예천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7월 1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72호

예천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매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제8호, 제14호, 제18호, 제1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7. 10.>

공유재산매각 경쟁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제26조 제28조 제29조 관련)

1. 입찰자는 이 유의사항, 입찰서 별지 제9호 서식 및 입찰보증금 납부서 별지 제11호 서식을 정해진 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입찰할 경우에는 그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서는 정해진 시각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3.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4.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반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5. 개찰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일시에 입찰자를 입회시켜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입찰자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시킬 수 있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 가. 입찰서에 입찰금액이나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나. 입찰 보증금이 없거나 입찰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될 경우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라. 입찰서 중 주요문자가 불분명할 경우
 7.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을 낙찰로 한다. 낙찰된 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8. 추첨에 참가할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시킬 수 있다
 9. 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이를 반환한다
 10.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2. 낙찰자가 위 10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3. 입찰등록자가 입찰시 유찰을 방지하고 특정한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등으로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한다
 14. 공유재산 매수자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과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7. 10.> (앞쪽)

공·사유립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계약보증금						
매매임야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매매면적 (㎡)	비고
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을 “갑”으로 하고 매도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은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갑(매수인) 수 탁 자 을(매도인) 주 소 성 명 인 인 인						
첨부서류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제1조 이 계약의 목적물은 임야와 그 종물을 포함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제1조에 따른 임야와 그 종물의 총 평가액으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잔금 지급 이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매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매매임야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4조 매매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을”은 제 3조의 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잔금 등 매매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1. 임야대장등본
2. 임야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법령이나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의 이행 전에 “갑”의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8조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건명 :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기관이 정한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붙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입찰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주소 :

상호또는명칭 :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 :

예 천 균 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제37조 제1항) <개정 2025. 7. 10.>

군 유 립 ☐대 부 ☐사용허가 신 청 서 처 리 기 한 15일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임 야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적		⑤신청면적	
⑥용도			⑧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⑦기간						
「예천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귀하 년 월 일 (인)						
수 수 료 없 음						
붙임서류 -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사업의 목적·기간, 공사·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도(6,000분의 1 실측도나 1,200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 3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별지 제18호 서식】 (제44조제2항 관련) <개정 2025. 7. 10.>

☐대 부 군유립 ☐사 용 허 가 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① 성 명			②생년월일			
명의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중 전	④ 성 명			⑤생년월일			
명의인	⑥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⑦ 소 재 지	⑧ 지 번	⑨ 지 적	⑩허가(분수립설정)면적			
임 야			m ²	m ²			
⑪ 허 가(분수립설정) 변 호 및 년월일		제 호 . . .		⑫ 용 도			
⑬ 허 가(분수립설정) 기 간							
⑭ 사 유							
「예천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제44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변경명의인) (인) 양도인(최초명의인) (인)							
예천군수 귀하							
불임서류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각1부 4. 그 밖의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임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 한 명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 각1부 5. 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 필요가 있 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제45조제2항 관련) <개정 2025. 7. 10.>

군유림 권리이전 ☐ 전 매 ☐ 양 도 ☐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성 명					생년월일					
양 수 인	주 소					전화번호					
②	성 명					생년월일					
양 도 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임 야	③ 소 재 지	④ 지 번	⑤ 지 적	⑥대부·허가면적			⑦양도면적				
⑧ 대부·허가번호 및 년 월 일		제 호 . . .		⑨용도		⑩ 대 부 허가기간					
⑪ 사 유											
⑫ 권리이전의내용											
「예천군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변경명의인) 양도인(최초명의인) (인) (인) 예 천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각1부 4. 그 밖의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임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 각1부 5. 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제8조, 별표 1, 별지 제3호, 제8호, 제14호, 제18호, 제19호서식)
 - ‘인감증명서’ 제출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함

예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7호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되고, 예천군 고시 제2025-57호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예 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공원)사업

나. 명 칭 :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변경) : 20,931㎡ → 20,927㎡ (감 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천군수(산림녹지과)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나.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읍 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성명	
기정	계 (26개 필지)						30,897	20,931					
변경	계 (26개 필지)						30,897	20,927					
기정	1	예천	남본	260-2	260-2	철도	13	13		경상북도			
기정	2	예천	남본	261-5	261-5	철도	971	971		경상북도			
기정	3	예천	남본	261-4	261-4	철도	175	175		경상북도			
기정	4	예천	남본	311-5	311-5	구거	79	79		국(농림부)			
변경	4	예천	남본	311-5	311-5	구거	79	75		국(농림부)			
기정	5	예천	남본	195-4	195-4	철도	17	17		경상북도			
기정	6	예천	남본	135-1	135-1	철도	5,137	4,745		경상북도			
기정	7	예천	남본	196-36	196-36	답	24	24		예천군			
기정	8	예천	남본	196-35	196-35	답	33	33		예천군			
기정	9	예천	남본	196-34	196-34	답	10	10		예천군			
기정	10	예천	남본	306-5	306-5	구거	60	44		국(기획재정부)			
기정	11	예천	남본	136-3	136-3	철도	1,769	1,769		경상북도			
기정	12	예천	남본	306-2	306-2	도로	7,412	237		국(건설부)			
기정	13	예천	남본	98-6	98-6	도로	2,486	103		예천군			
기정	14	예천	남본	157-9	157-9	잡	660	660		예천군			
기정	15	예천	남본	158-3	158-3	철도	17	17		경상북도			
기정	16	예천	남본	99-1	99-1	철도	5,550	5,550		경상북도			
기정	17	예천	남본	306-11	306-11	철도	175	175		경상북도			
기정	18	예천	남본	100-2	100-2	철도	122	122		경상북도			
기정	19	예천	청북	1038-1	1038-1	철도	38	38		경상북도			
기정	20	예천	청북	876-2	876-2	철도	1,124	1,124		경상북도			
기정	21	예천	청북	1023-6	1023-6	철도	50	50		국(농림부)			
기정	22	예천	청북	1025-4	1025-4	철도	43	43		경상북도			
기정	23	예천	청북	760-3	760-3	답	1,198	1,198		예천군			
기정	24	예천	청북	761-7	761-7	철도	3,683	3,683		경상북도			
기정	25	예천	청북	761-4	761-4	철도	50	50		경상북도			
기정	26	예천	청북	761-6	761-6	답	1	1		예천군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과 비치)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산림녹지과(☎054-650-6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예천군 고시 제2023-186호로 군관리계획(공원,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예천읍 남본리 172-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예 천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 2) 명 칭 : 예천 남산공원 야외주차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6,055㎡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예천군수(산림녹지과)
- 2)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읍면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성명	
	계 (18개 필지)				6,055	6,055					
1	예천	남본	42-12	임	1,162	1,162		예천군			
2	예천	남본	42-14	도	89	89		예천군			
3	예천	남본	48-13	전	5	5		예천군			
4	예천	남본	168-1	대	1,240	1,240		예천군			
5	예천	남본	168-6	대	407	407		예천군			
6	예천	남본	168-24	대	38	38		예천군			
7	예천	남본	168-28	대	3	3		예천군			
8	예천	남본	170-4	전	81	81		예천군			
9	예천	남본	170-25	도	1	1		예천군			
10	예천	남본	171-1	잡	1,104	1,104		예천군			
11	예천	남본	171-5	전	20	20		예천군			
12	예천	남본	171-8	대	7	7		예천군			
13	예천	남본	171-10	전	49	49		예천군			
14	예천	남본	172-2	전	1,137	1,137		예천군			
15	예천	남본	172-4	전	314	314		예천군			
16	예천	남본	172-5	전	61	61		예천군			
17	예천	남본	172-7	전	189	189		예천군			
18	예천	남본	176-76	임	148	148		예천군			

사. 열람기간 : 2025. 7. 7. ~ 2025. 7. 21. (14일간)

아. 열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예천읍 충효로 111, 4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산림녹지과(☎054-650-6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